

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 확인 제출서류

※ 모든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7.26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반드시 '상세'로 발급받으시기 바람.
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서류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, 세대주 여부,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반드시 "상세"로 발급받으시기 바람.

구분	해당서류	발급 기준	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
공통 서류	서약서	본인	• 견본주택 비치
	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 등	본인	• 견본주택 비치
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,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, 서명인증서(외국인에 한함)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
	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
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(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)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
	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
		직계존속	•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
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 - 미혼, 이혼, 사별, 단독세대,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
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•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•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
가점점수 산정기준표	본인	• 견본주택 비치	
해당자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-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
	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직계비속	•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
	출입국사실증명서	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	• 피부양 직계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•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
	해외체류(단신부임) 관련 증빙서류	본인	•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(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) ※ 근로자가 아닌 경우 :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
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배우자	•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(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
		직계존속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 및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사실 확인
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	직계비속	• 만18세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복무확인서	본인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
자금조달계획서	본인	• 견본주택 비치 ※ 101㎡만 해당	
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	※ 본인 이외에 모두 대리신청자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포함)로 아래 서류 추가제출		
	위임장	본인	•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/ 견본주택 비치
	인감증명서	본인	• 본인 발급분에 한함 (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불가) ※ 단,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대리인 신분증/인장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 주택	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,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축물 철거명실신고서 등 • 소형 자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당첨사실 소명자료	본인	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